

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8. 2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(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)제7항, 제9항 및 제54조(감독 등)제7항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7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시·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·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% 이상 50% 이하로써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상한 적용방법을 규정함. (안 제34조제3항)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9항에서 공공시행자등은 제8항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% 이상 50% 이하로써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상한 적용방법을 규정함. (안 제34조제4항)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4조제7항에서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·군수등에게 인계하는 방법을 규정함.
(안 제36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2. 6. 15. ~ 2022. 7. 5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5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관련 자료의 인계)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1. 이전고시 관계서류
2. 확정측량 관계서류
3. 청산 관계서류
4. 등기신청 관계서류
5. 감정평가 관계서류
6.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
7.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
8.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
9. 회계감사 관계서류
10.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
11.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주택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주택과장 홍 석 효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재건축사업팀장 정 성 기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나 종 운 (행정 238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4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법 제49조제7항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</u></p> <p>④ <u>법 제49조제9항에서 “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”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</u></p> <p><u>제36조(관련 자료의 인계)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구획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이전고시 관계서류</u> 2. <u>확정측량 관계서류</u> 3. <u>청산 관계서류</u> 4. <u>등기신청 관계서류</u> 5. <u>감정평가 관계서류</u> 6. <u>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</u> 7. <u>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</u>

8.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

9. 회계감사 관계서류

10.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 및 감사의
감사 관계서류

11.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
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
류